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산 립 자 원 의 조 성 및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요건과 산림사업 관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31조)

-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종목으로 나열하던 것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임업 또는 조경분야)로 일원화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한정하던 자격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임업 또는 조경 분야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면 모두 가능하도록 자격범위를 확대
- 원격대학 등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에 적용법령을 규정

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 명확화(안 제25조 관련 별표 1)

-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 종류 확대를 위해 법인을 추가로 등록

하려는 경우의 자본금 기준 및 시설(사무실) 구비요건 완화

- 조경기술자의 산림사업(유아숲체험원 조성) 참여확대를 위해 ‘자연휴양림 등 조성’ 법인의 기술수준(인력요건)에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를 추가

다.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제73조 관련 별표 3)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기준 마련

*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서 제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기능사·임업종묘기능사·목재가공기능사·펄프제지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를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임업 또는 조경분야의 기능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2 중 “법령”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별표 1 제5호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나목 중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를 “종류”로 한다.

-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녹지조경기술자의 경우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한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의 종류보다 자본금 요구액이 많은 산림사

업의 종류를 추가할 경우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 비고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등록을 신청하는”을 “등록하려는 경우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의6에 따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추가로 등록하려는”으로 한다.

다. 시설: 사무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3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를 “제2호의 개별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렇지”를 “그러하지”로 하며, 같은 목 3) 중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를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로, “과태료 금액을 감경”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를 “제2호의 개별기준”으로, “그 금액을 가중”을 “가중”으로 하며, 같은 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9조”를 “법 제79조”로 하고, 같은 목 3) 중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를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로, “과태료 금액을 가중”을 “가중”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 격 요 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1.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林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 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 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1억원 이상	
3. 삭제 <2018. 6. 26.>				
4.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 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3억원 이상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숲속야영장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 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녹지조경기술자의 경우	3억원 이상	

	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 산림교육센터 조성 자. 수목장림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한한다)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6. 도시림 등 조성	가.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 시설의 설치 나. 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 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7. 숲길 조성·관리	숲길 조성·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 요건 1)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3억원 이상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의 종류보다 자본금 요구액이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경우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시설: 사무실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하려는 경우와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이 표에서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9조 제5항	해당 조림 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의 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법 제79조 제2항제1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법 제79조 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라.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입목벌채등을 한 경우	법 제79조 제1항제2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36조의3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9조 제1항제2호의 2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기업경영립 경영계획구에서 입목벌채등이 수반되는 사업을 한 경우	법 제79조 제1항제3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사.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와 질문을 방해한 경우	법 제79조 제2항제5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법 제 31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u>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기능사·임업종묘기능사·목재가공기능사·펄프제지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u>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 <u>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임업 또는 조경분야의 기능사</u> ----- ----- -----
1의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의2. ----- -----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임업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자원과	
연 락 처	(042) 481 - 4044